



APR CORP.

보상위원회 규정

보상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보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토의,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 3 조(직무와 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.

- 임원에 대한 보수정책 결정
- 임원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평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
- 장기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임원 성과지표의 평가 결정
- 기타 임원에 관한 보수와 관련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

-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보상위원회 위원 (이하 "위원"이라고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-
-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종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 1 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4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 주일 전에 각 위원에 모사전송, 등기우편, 또는 전자적 방법(컴퓨터 통신, 전자우편 등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
- ③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-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위원회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한도
- 2.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보상정책
- 3. 임원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
- 4. 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 지급기준
- 5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10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2 조(이사회와의 관계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13 조(보고)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5 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<버전1.0, 2026. 3. 31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.